

# 충남대학교 대학원 원예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
[제정 2013.2.22.]

개정 2015.3.12.

**제1조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원예학과(이하 “학과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학위과정, 학·석사연계과정,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논문제출자격)**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,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세미나 과목을 수강하고 3회 이상 발표한 자
2.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합격한 자
3. 외국어 평가위원회에서 외국어 능력 자격을 승인받은자
4.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은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연구계획을 승인받은 자
5.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은 학과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

**제4조(논문제출자격시험)** ①(응시절차)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(시험과목) 석사학위과정, 학·석사연계과정,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의 시험과목은 전공에 대하여 석사학위과정 및 학·석사연계과정은 3과목 이상,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출제한다.

③(시험출제기준)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
④(출제위원 및 채점위원)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. 다만, 부득이

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- ⑤(합격기준)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 불합격된 시험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. 단, 자격시험에 재응시 할 경우 지난 학기에 합격한 과목과 상관없이 해당시험결과로 합격여부를 판정한다.
- ⑥(보고) 계열학사위원장은 자격시험의 합격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외국어능력 기준)** ① 석사학위과정, 학·석사연계과정,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평가위원회를 둔다.(2015.3.12.)

- ②영어평가위원회는 학기별 전임교수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과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평가한다.(2015.3.12.)
- ③석사학위과정, 학·석사연계과정,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들은 학위논문 발표 이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외국어 평가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. (2015.3.12.)
- ④외국어 능력은 전공 분야 활용 능력 등을 평가한다.(2015.3.12.)
- ⑤외국어 능력 평가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 불합격된 시험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. (2015.3.12.)

**제6조(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)** 규정 제40조 2항을 근거로 본 과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계속하여 둔다.

- ①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.
- ②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,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
- ④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,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.

**제7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** ①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국내

외 학술지에 논문 2편 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투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여부는 무관하다. 단,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.

②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의 졸업논문내용과 학술지 게재 논문 내용이 중복되어도 무관하다.

**제8조(시행세칙의 개정)**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(2015.3.12.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어능력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.